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8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건축법」 개정 및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, 정비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정비(안 제36조)

- 건축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허가권자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 '1년에 2회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'로 바뀌었으나,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(반복)부과를 적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건축법」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 없음
다.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58494(2018. 10. 22)〕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8270(2018. 10. 18)〕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0. 19. ~ 2018. 11. 8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5회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(생략)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.	제36조(이행강제금의 부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5회로 한다.